

김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20호

2020년 김제시 지방공무원(운전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 김제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운전직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김제시인사위원회위원장

I 시 험 개 요

가.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급	직렬	직 류	선발예 정원	시험과목
계	운전	운 전 (보훈청 추천 포함)	16	
9급	운전	운 전	13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운 전 (보훈청 추천)	3	

나. 시 험 일 정

시 험 명	원서접수 기 간	원서접수 취소기간	시험방법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김 제 시 경력경쟁 임용시험	11.5. ~11.9 (5일간)	11.5. ~11.11. (7일간)	필기시험 (1·2차병합)	11.27.	12. 5.	12.16.
			면접시험 (3차)	12.16.	12.23.	12.30.

※ 재해·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시 험 방 법

가. 필기시험(1·2차병합)

시 험 명	시험시간	직류·직급	과목수
김제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10:00~10:40 (40분)	운전9급	2과목

1. 배점 및 문항 : 과목당 100점 만점이고,
과목별 20문항으로서, 4지택1 선택형입니다.
2. 합격 결정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인원(선발예정인원의 100%)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면접시험(3차)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면접시험 성적만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면접시험 결과 합격 등급(우수, 보통)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로 결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고, 평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 면접장소 및 일정, 면접조 편성,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III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응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9급) :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 2020년 김제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9년12월31일 이전까지 김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자격증 등 제한(기준일 : 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직급	직렬	직류	학력 및 자격증·면허증 등 제한
9급	운전	운전	제1종 운전면허(대형)

주 1.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IV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원서접수 및 취소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 5,000원(9급)

- 응시수수료 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비용,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

(단, 접수 시작일은 09시부터 접수 /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사진규격 : 3.5cm×4.5cm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해당시험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관련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V

수험생 참고 및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문제출제

- 필기시험 과목 문제는 전라북도에 위탁 출제하며, 출제 과목은 비공개로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나. 전출제한 임용예정기관

-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4년의 전출 제한기간 이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 지원 대상자에 한하며, 해당 보훈(지)청에서 추천한 응시자는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김제시 홈페이지(www.gimje.go.kr)의 [소식/참여] -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김제시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자치행정과 인사담당(☎063-540-32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관련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VI | 가산점 관련 안내

가. 가산점 대상자 및 가산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항목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 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시험단위(직급·직류·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등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제1항 제2·3호에 의한 대상자는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시험단위(직급·직류·임용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4,3255) 또는 김제시 주민복지과(☎063-540-3312)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 표에 제시된 정보·통신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라. 가산점 관련 유의사항

- 2020년 김제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C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시 험 명	가산점 등록기간	비고
김제시 경력경쟁임용시험	2020. 12. 5(토) ~ 12. 9(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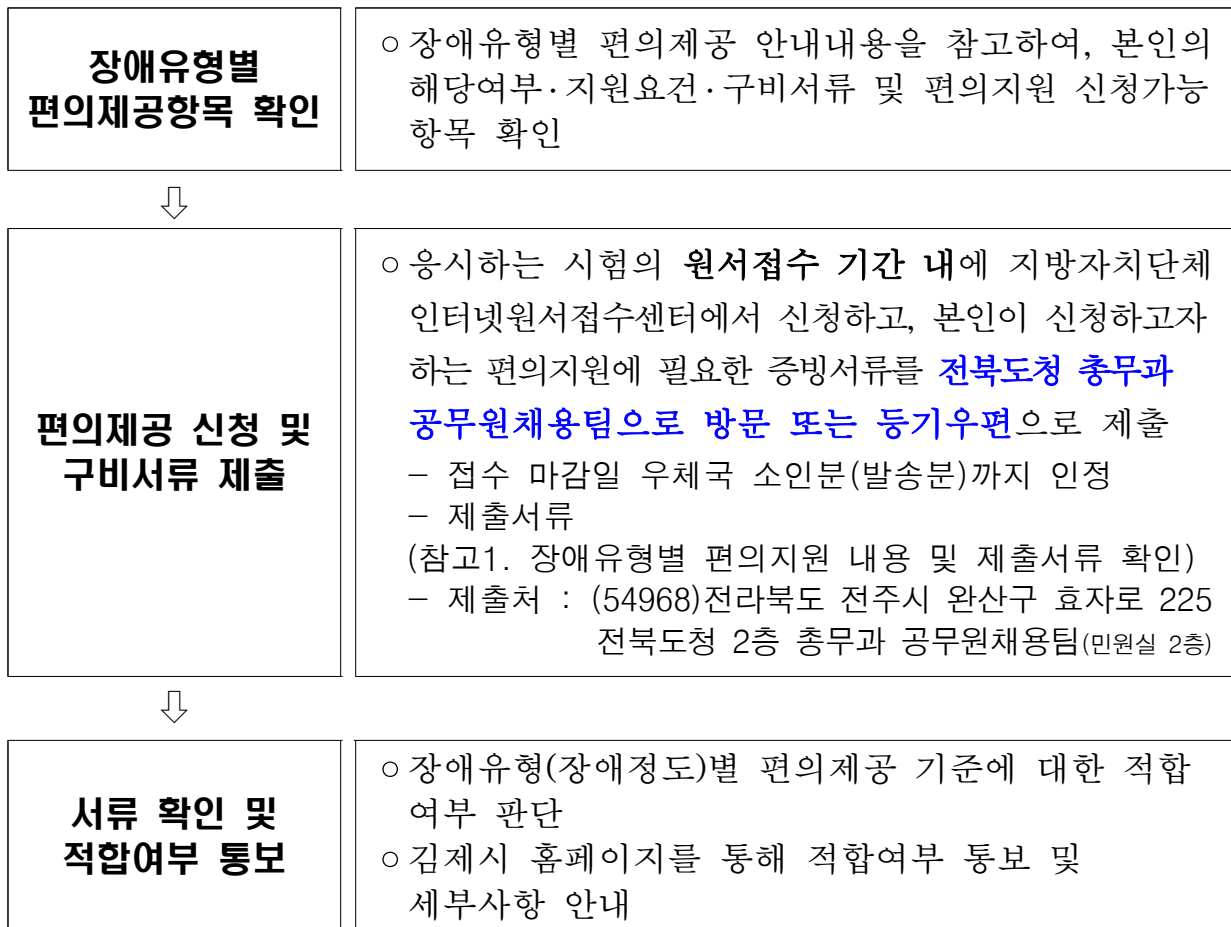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의 경우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및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합산 관련
 - ①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및 의사상자 가산점 (5% 또는 3%)
 - ②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 (1% 또는 0.5%)
 응시자가 보유한 ①, ②의 가산점을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①+②) 적용합니다. ①, ②의 분류 내에서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적용됩니다.
- 해당 기간 내 가산자격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정상 등록하지 않았거나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VII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가. 안내사항

- 2020년 김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 임신부

나. 편의지원 신청 절차



다.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참고1)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해당여부·지원요건·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고한 후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시험시간 연장을 포함한 일부 편의지원(음성, 점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에는 장애로 인한 해당 편의제공 내용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만 인정)
- ※ 해당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시험 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김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063-540-32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및 등급			편의지원 내용	제출(증빙)서류
지체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과거.1급~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없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과거.4급~6급)	확대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없음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과거.1급~6급)	별도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해당없음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과거.1급~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해당없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과거.4급~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 의사진단서(원본)
		대필		◦ 의사소견서(원본)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과거.1급~2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해당없음
	장애정도가 심한자 (과거.3급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과거.4급2호) (시야 10도 이하)	시험시간 1.7배 연장		◦ 의사진단서(원본)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점자문제지 제공		◦ 의사진단서(원본)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해당없음
	장애정도가 심한자 (과거.3급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과거.4급1호, 5급1호)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해당없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과거.3급)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	시험시간 1.5배 연장		◦ 의사진단서(원본)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해당없음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자 (과거.5급2호, 6급)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해당없음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과거.2급~6급)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수화통역사 배치	해당없음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의사소견서(원본)
	임신부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 의사소견서(원본)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 1

※ 축소문제지 : A3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중 택 1

참고2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舊3급2호) 장애정도가 심한 자 (舊4급2호)	상기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舊6급)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	상기인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상기인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임신 6주, 필기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